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1.03.09 (수) 14:00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
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
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3월 2일

3. 제안 이유

-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의 정비(안 제1조 ~ 안 제8조, 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